

어획물운반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어선	선박명			진수연월일	
	톤수			마력수	
	선적지 및 어선번호			G/T HP	
	주요기기 및 시설				
신청 내용	운반 구역				
	운반 대상 어획물 또는 제품의 종류				

「수산업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2.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법인이나 공동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자격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검사증서(「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 제2호에 따른 수산물운반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선박국적증서등(어획물운반업의 등록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인	→	접수 시·군·구	→	확인 시·군·구	→	기안·결재 시·군·구	→	어획물운반업 등록증 발급 시·군·구